

감염병 국내 확산 방지 등을 위한



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

도입목적

감염병 및 테러 위기 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·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

신고시기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'관심' 이상의 위기경보* 발령 시 또는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에 따른 '주의' 이상의 위기경보* 발령 시
* 경보단계는 '관심', '주의', '경계', '심각' 순으로 상향

외국인

대상

B-1(사증면제), B-2(관광·통과), C-1(일시취재), C-3(단기방문), C-4(단기취업)의 단기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한 외국인

의무

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(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)

숙박업자

대상

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또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관광숙박업,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,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

의무

숙박업자가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등의 정보를 법무부가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(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)

※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 또는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(www.k-eta.go.kr/trds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